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학대 증거수집을 위한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허용〉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53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예지의의원 등 19인
2. 발 의 일: 2025. 11. 18.
3. 회 부 일: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

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5항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나.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실행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아동학대의 증거수집을 위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아동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¹⁾, 이를 위반할 경우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지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²⁾, 불법으로 녹음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³⁾

□ 그런데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녹음하거나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증거수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제3자에 의한 비공개 녹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⁴⁾.

○ 아동, 노인 등의 학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사례⁵⁾나 녹음자료를 토대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대한 통관검사절차

3. ~ 5. (생략)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판사 출신 차성한 “장애아동 학대 의심으로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로리더, 2026.6.22. 자 기사,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54>

5) [현장M출동] 어린이집 폭언에 정신치료...녹취 들어보니, MBC 2013.5.6.자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278658_30357.html

[단독] “쥘어터지더니 순해졌네” 피명 들어 돌아온 아버지-노인센터 다녀온 아버지의 상처 아들은 녹음기를 부착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 2020.6.11. 자 기사, https://www.chosun.com/site/ata/html_dir/2020/06/11/2020061103010.html

○ 최근 하급심에서 제3자에 의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으나⁶⁾, 여전히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대한 예외⁷⁾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아동학대 증거수집을 위하여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⁸⁾.

□ 다만, 제3자에 의한 녹음·청취를 허용·확대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증거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등 헌법상 기본권⁹⁾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사항임¹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6) 특수교사의 자폐아동에 대한 수업 중 발언 녹음 사건의 1심판결에서는 녹음 내용 중 일부 발언을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내렸음(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다만, 항소심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 녹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음(수원지방법원 2025.5.13. 선고 2024노1400 판결).

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감청, 녹음, 청취 등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환부우편물의 처리(제1호),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제2호),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제4호), 혼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제4호)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각각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조문이 명시되어 있음.

8) 중증장애인 및 노인에 대하여는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350호)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351호)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9)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0)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제한을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¹¹⁾, 제3자의 비밀녹음·청취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허용 요건의 불명확성에 따른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따라서 아동 보호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 허용 요건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증거수집을 위해 타인 간의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 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 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 ----- ----- ----- ----- ----- ----- -----.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일정한 요건(아동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을 확대해석할 경우 타인 간의 비밀녹음이 오남용할 우려도 있을 수 있음.

현행	개정안
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략) <u><신설></u>	----- --.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증거 수집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

□ 참고로,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증거수집을 위해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350호)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351호)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¹³⁾

□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의 필요성, 취약계층 학대사건의 예방 필요성, 피해자 인권보호 및 구제의 필요성, 해외입법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¹⁴⁾

13) 해당 개정안들은 2025년 11월 18일 발의되어, 다음 날인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됨.

-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해당 법률안이 초래할 헌법적 가치 훼손,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한 확산, 입법 목적 달성의 실효성 및 효율성 문제, 법 적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부작용 및 오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⁵⁾

문 의 처
02-6788-5051

14) 참조 판례(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중 략]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통신 및 대화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15) 구체적으로, ▲헌법적 가치 위배 및 기본권 침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결(2020도1538 2024.1.11.),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개정안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는 것이 지나치게 모호, ▲사적 감청 합법화 등 그 위험성, ▲법의 오남용 가능성: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다툼 상황 등 다양한 오남용이 예측,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장으로 조장하는 법’, ▲역설적 교육적 피해 우려 및 교원 사기 저하,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남발로 고통받는 교육 현실 외면 등의 이유임.